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59
----------	-------

발의연월일 : 2026. 2. 13.

발 의 자 : 송언석 · 박성훈 · 이종욱
박준태 · 김은혜 · 박형수
최은석 · 김 건 · 김상훈
박대출 · 이달희 · 유상범
정점식 · 안철수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과세하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전세대출 부담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5천만원을 초과하는 전세대출에 대해 부과되는 인지세 또한 국민들에게 납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임차인이 전세자금 마련을 위하여 체결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전세대출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함(안 제6조제8호의2 신설).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주택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전세자금 조달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 체결하는 대출 계약에 관
한 증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 부하지 아니한다. 1. ~ 8. (생 략) <u><신 설></u>	제6조(비과세문서) ----- ----- -----. 1. ~ 8. (현행과 같음) <u>8의2. 주택의 임대차와 관련하</u> <u>여 임차인이 전세자금 조달을</u> <u>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금융·보험기관과 체결하는</u> <u>대출 계약에 관한 증서</u>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